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

접견신청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일시</td><td colspan="4">20 년 월 일 :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피의자(유치인)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신청인</td><td rowspan="4">변호인 이외의 자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주민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유치인과의 관계</td><td></td><td>직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령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변호인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변호사 등록번호</td><td></td><td>선임여부</td><td>□ 선 임
□ 비선임</td></tr>
<tr><td>소속 법률사무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※ 1. 변호인은 접견신청서와 함께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비선임 변호사인 경우에는 선임여부 항목에 비선임 체크(☑)를 하시기 바랍니다.

[접견(면회) 시 유의사항]

□ 피의자를 접견(면회)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휴대 및 제공이 금지됩니다.

① 마약·총기·도검·폭발물·흉기·독극물,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

② 무인비행장치, 전자·통신기기,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

③ 주류·담배·화기·현금·수표,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

④ 음란물,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, 그 밖에 유치인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

□ 유치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·담배·현금·수표를 허가 없이 유치장에 반입하거나 유치인과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휴대폰, 사진기 등을 몰래 반입하여 유치인 또는 유치장 시설을 촬영하거나 접견(면회) 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.

□ 접견(면회) 중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치장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접견(면회)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□ 접견(면회)인의 개인정보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유치행정 업무를 위해 수집·활용됩니다.

본인은 접견 시 유의사항 열람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(면회)가 중지될 수 있음을 근무 경찰관에게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 위 확인자 (인)